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복무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관계 법령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, 소방시설공사업법 등)에서 소방청장에게 주요 소방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, 매년 시행계획·실태조사 등 정책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 이러한 소방정책의 집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함은 물론, 최근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 위반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자,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확인·점검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4. 10. . ~ 1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복무 실태의 확인·점검 등)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,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(소방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조치를 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 점검 및 의무위반행위의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복무 실태의 확인·점검 등)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복무를 점검하고,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 <u>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(소방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해당 소방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</u> <u>③ 소방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조치를 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</u>

	<u>정한 사항 외에 복무 점검 및 의무위반 행위의 방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5 - 7412